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 중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개정(2024.2.20. 공포, 2024. 8.21.시행)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(안 제22조 및 제47조의7)

- 법 개정(2024.8.21. 시행)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조항 삭제, 자구수정 등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항”을 “법 제22조의3제2항”으로, “또는 예비인가 여부”를 “여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비인가 및 설립인가”를 “설립인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인가(예비인가를 포함한다)”를 “인가”로 한다.

제47조의7제1항제2호 중 “법 제22조의3제1항·제4항”을 “법 제22조의3제1항”으로, “설립인가, 예비인가”를 “설립인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자산관리회사의 인가) ① <u>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1.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</u> <u>2. 자기자본(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사항</u> <u>3. 발기인에 관한 사항</u> <u>4.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u> <u>5. 업무수행의 방법</u>	제22조(자산관리회사의 인가) <u><삭 제></u>
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u>1. 정관안</u> <u>2. 발기인회의 의사록</u> <u>3.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</u> <u>4. 시설계획서(전산설비, 점포, 내부시설 등)</u>	<u><삭 제></u>

5.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
사업계획서

6.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
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

7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
통제기준안

③ (생 략)

④ 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
항에 따라 인가 또는 예비인가
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
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
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
터 3개월 이내에 자산관리회사
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
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
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⑥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및
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
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
하여 고시한다.

1. · 2. (생 략)

3. 제4항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
를 포함한다) 여부 결정 시 확
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22조의3제2항-----
----- 여부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⑥ ----- 설립인가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인가 -----

4. (생략) 제47조의7(업무위탁) ① 국토교통 부장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부동산원에 위탁한다. 1. (생략) 2. <u>법 제22조의3제1항·제4항</u>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 관리회사의 <u>설립인가, 예비인</u> <u>가</u>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 한 사실의 확인 3. ~ 6. (생략) ②·③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 제47조의7(업무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법 제22조의3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<u>설립인가</u> ----- -----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15